

## AI-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부산광역시 동래구보건소에서는 2025년 「AI-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」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7. 9.

동 래 구 보 건 소 장

### 1. 채용분야 및 인원

분야	채용인원	자격요건	우대사항
간호사	1명	간호사 면허증 소지자	- 보건소 근무 경력자 - 해당분야 근무 경력자 -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- 공고일기준부산광역시동래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- 취업지원 대상자

### 2. 근무조건

- 가. 근무기간: 2025. 8. 1~12. 31. ※ 예산범위 내 변경 가능
- 나. 보 수: 월 240만원(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)
- 다. 근무시간: 주 5일, 1일 8시간 (09:00~18:00, 휴게시간 1시간 포함)
- 라. 근무장소: 동래구보건소 방문건강관리실 등
- 마. 복 무: 「부산광역시동래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 준용
- 바. 근무내용
- AI-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전반, 방문건강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
  -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등

### 3. 응시방법

- 가. 접수기간: 2025. 7. 14.(월)~7. 17.(목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- 나. 접수방법: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

방문 접수	전자우편 접수
동래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동건강지원계 (평일 9:00~18:00 접수, 12:00~13:00 제외)	<a href="mailto:hyo159@korea.kr">hyo159@korea.kr</a> (응시번호 메일 회신 예정, 기타 문의 ☎ 550-1952)

\* 전자우편 접수의 경우 서명이 완료된 스캔본만 인정

### 4. 제출서류 ※ 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함

- (기) 본인①응시원서 1부  
②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
③해당분야 면허(자격증) 사본  
④경력(재직)증명서 및 전산자격증 사본 ※ 해당자에 한함  
⑤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※ 동래구 주소 해당자에 한함  
⑥취업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※ 해당자에 한함
- (최종합격자)①채용결과서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
②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 
③공정채용 확인서 1부  
④채용신청서 또는 국가건강검진결과서 1부
- (희망자)①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

### 4. 채용방법

#### 가. 1차 심사: 서류전형
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2025. 7. 22.(화) ⇒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
- 서류전형 심사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선정
- 나. 2차 심사: 면접전형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  
○ 일시 및 장소: 2025. 7. 24.(목) 10:00, 동래구보건소 4층 소회의실 ※ 예정  
○ 심사방법: 면접전형 심사표에 따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등  
※ 면접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# 다. 최종합격자 발표: 2025. 7. 25.(금) ⇒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※ 예정

- 1차(서류) 점수 합격자 중 2차(면접) 점수가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하며 2차(면접) 점수 동점자 발생 시 1차(서류) 점수 고득점자 우선 선발
-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최종합격자가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포기, 채용결과서유, 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가능

### 5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, 연락 불능, 응시자 유의사항 미준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나. 합격자 통지 후, 건강검진 결과 및 기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다.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1회 이상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라. 합격자는 전화로 통지할 예정이며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.

- 마. 본 공고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 (변경사항 별도 공고)  
 바. 채용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반환 청구(확정된 최종 대상자는 제외)할 수 있습니다.

-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: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90일까지 ▶법 제11조, 시행령 제4조
- 반환 청구 채용서류는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송(전달) ▶시행령 제2조
-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과기 ▶법 제11조

사.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, 재계약(계약연장 포함)이나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.

아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동건강지원계(☎051-550-1952)로 문의 바랍니다.

자. 기타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.

**붙임 1. 응시원서 1부.**

1.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 1부.
2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.
3.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.
4.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.
5. 공정채용 확인서 1부.
6.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. 끝.

**【붙임1】 공통**

**응시원서**

**1. 공통사항**

응시분야	AI-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□간호	응시번호 (기재하지 말 것)	
성명		생년월일	
주소			
연락처 (휴대전화)		전자우편 (e-mail)	

**2. 주요 경력사항**

회사명	근무기간	담당업무	비고

**3. 면허·자격사항**

면허·자격증명	취득(예정)일	발급기관	비고

**4.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(관련 경력 있을 시 상세히 기재)**

취업지원 대상자 여부	보훈번호	
----------------	------	--

※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)  
 ※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
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성명 : (인)

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장 귀하

## 응시원서 작성요령

-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 
(본인 필체 또는 워드)
-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
- 응시원서는 아래의 《작성요령》에 따라 작성함

### 《작성 요령》

- ① 공통사항 : 주소는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하는 곳을 작성
- ② 경력사항 : 근무 경력을 작성하되, 관련 분야 경력 작성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 
※ 작성 공간이 부족한 경우 추가하여 작성 가능
- ③ 면허 · 자격사항 : 해당 면허 · 자격증명을 작성하되, 작성한 경우 면허 · 자격증 사본 제출
- ④ 자기소개 : 학교명, 출생지 등 개인 신상을 직 ·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  
작성하지 않도록 주의
- ⑤ 응시번호는 작성하지 아니함

### 【붙임2】 공통

####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동래구보건소는 기간제근로자(AI-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)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· 이용하고자 합니다.

##### □ 기본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내역(필수사항)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주소, 연락처, 전자우편주소, 경력·재직사항, 면허·자격사항	본인 확인, 채용절차 진행, 경력·자격 확인	채용서류 반환기간 이후 삭제 (최종합격자 5년 보관)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

##### □ 고유식별정보 수집 · 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주민등록번호	본인 확인, 채용절차 진행, 경력·자격 확인	채용서류 반환기간 이후 삭제 (최종합격자 5년 보관)

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

##### □ 민감정보 수집 · 이용 내역(최종 합격자에 한함)

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채용신체검사결과서, 국가건강검진결과서	지역보건의료기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적합성 여부 판단	최종합격자 5년 보관

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

※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등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2025년 월 일

성명: (서명 또는 인)

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장 귀하

【붙임3】 해당자

## 행정 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- 이용기관 명칭 : 동래구 건강증진과
-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
-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행정 정보명
주민등록표 등·초본

\*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### 주민등록번호 :

▶ 주민등록번호 미기재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### 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 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(등본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25년 월 일

대상자 본인

성명 : (서명 또는 인)  
생년월일 :  
전화번호 :

【붙임4】 최종합격자

##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건강증진과에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(AI-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)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「부산광역시동래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」 제19조(채용결격사유)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.

- ① 「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」 제12조(결격사유)
  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 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자
- ② 징계해고를 처분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  -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-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별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④ 그 밖의 개별법령에 다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

또한 이상과 같이 위 기간제근로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,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채용예정자: (서명)

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장 귀하

## 【붙임5】 최종합격자

**부패방지권의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[확인서]**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## 〈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〉

1.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의위법 제2조제3호 『국가공무원법』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
2. 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'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의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족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
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
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의위법 제82조제1항제1호)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
4-3. 권리위법(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의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

\*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25년 월 일

생년월일

채용예정자

(서명)

## 【붙임6】 최종합격자

**공정채용 확인서**

성명:

생년월일:

상기 본인은 동래구 AI-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.

-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(이하 '본인 등')에 의한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
-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
-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·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
- 그 밖의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

2025년 월 일

서약자

(서명)

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장 귀하

【불임7】 희망자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
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20 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동래구 보건소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